



알기쉬운 생활법률 사례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채권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Q: A는 저희 업체에서 월 150만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재직중인 직원입니다(단 상여금은 110만원씩
년 2회 지급). 그런데 A의 채권자가 A의 저희업체에 임금채권을 압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
니다. 임금채권의 일부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범위는 어떠한가요?

A: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는 “급료 · 연금 ·
봉급 · 상여금 · 퇴직연금, 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
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
통령령이 정한 금액(이하 ‘압류금지 최저금액’이라고 합
니다)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
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
으로 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압류금
지 최저금액을 월 12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제집행을 당하는 채무자에게 인간다운 삶의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것을 그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급여채권의 2
분의 1’이라 함은, 급여총액에서 세금, 공공보험료 등 원천징수액을 뺀 잔액(이라 ‘실수령액’이라 합
니다)의 2분의 1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A가 신청업체로부터 받고 있는 월급은 150만원이고, 그 실수령액의 2분의 1이 월 120만원에 미치지 못 함은 명백합니다. 따라서 A의 신청업체에 대한 임금채권 중 월 120만원 부분은 법률상 압류가 금지됩니다. 그런데 A가 신청업체로부터 상여금 110만원을 받는 달의 경우 그 달에 신청업체로부터 받는 임금액은 총 260만원인바, 이 경우 만일 A의 실수령액이 240만원을 넘는다면 그 실수령액의 2분의 1, 실수령액이 24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120만원이 압류금지채권액이 될 것입니다.

본점과 지점의 상호를 다르게 등기할 수 있는지요?

Q: 저희 업체는 본점 이외에 지방에 지점을 설립할 계획이 있는데, 이 경우 본점과 지점의 상호를 다르게 등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상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동조 제2항에서는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지점의 상호가 본점과 다를 수는 없고(상호단일의 원칙), 단지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는 한도 내에서만 상호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본점의 상호를 ‘금성전자’, 지점의 상호를 ‘금성전자 부산지사’로 하는 것은 허용되나, 지점의 상호를 현대전자나 삼성전공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